

# 「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사 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년 9월 6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2년 9월 15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7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2년 9월 15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허가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「건축법」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라 변경된 상위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위임사항을 규정하며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. 「건축법」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른 상위 근거법령 변경 및 삭제
- 2). 건축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(제6조제2항)
  - 가) 위원장은 ‘군수 임명’에서 ‘주무부서의 국장’, 부위원장은 ‘위원 중 호선’으로 임명

- 3). 평창군 건축위원회가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 신설(제8조제4항 ~ 제6항)
- 4). 허가권자가 공사 중단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안전관리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 및 안전관리를 개선하도록 하는 사항 신설(제10조제7항)
- 5). 규제 완화를 위하여 공개공지 확보대상에서 10층 이상인 건축물 조항 삭제 및 공개공지 내 제한행위 신설(제17조제1항 및 제7항)
- 6).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거리 기준 마련(제23조제4항)
- 7). 이행강제금 감경 및 가중 대상 신설(제24조의2, 제24조의3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#### ○ 본 조례안은

「건축법」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른 상위 근거법령 변경 및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 행정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
#### ○ 주요내용은,

안 제8조제4항 ~ 제6항에서

평창군 건축위원회가 건축정책위원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을 신설하고,

안 제10조제7항에서

공사 중단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안전관리예치금을 사용하여  
공사현장의 미관 및 안전관리를 개선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
안 제17조제1항에서는

공개공지 확보대상에서 10층 이상인 건축물 조항을 삭제하여  
규제를 완화하였고,

안 제23조제4항에서

공동주택의 채광 확보거리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.

○ 검토결과,

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자문기관(자문·심의)은  
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 
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

기타 개정사항은

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비하며  
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도모하고자  
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촉사항 및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의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

붙임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